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공고 제 134 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고,
-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며,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안 제1조의2,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9까지)
 -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 포함시키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함)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면서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법령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2)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안 제12조, 제15조제2항)
 - 공증인 임명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자로 한정하고,
 - 공증인 정년 제도를 부활하여 75세로 규정함
- (3)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안 제15조의

4, 제15조의5, 제15조의7)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로 하면서 75세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임명직 공증인과의 통일을 꾀함

(4) 공증인 교육 강화(안 제15조의10, 제77조의5)

- 공증인으로 신규 임명을 받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공증인 및 공증보조자는 정기적으로 대한공증인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5) 선진 공증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2,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 제89조)

- 사서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선서를 통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선서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전자문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6)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단체화(안 제6장의2)

- 모든 공증인은 공증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대한공증협회를 강제단체로 변경하고,
-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실시하고,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함

(7) 징계제도 개선(안 제82조제1항제3호, 제83조제2호)

- 공증인의 징계사유에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 현행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징계)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507-0172

Fax 503-0135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사항임

법률 제 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목을 “공증인법”으로 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자(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와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정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정(公正)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청구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에 대한 원활한 공증사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관할구역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증인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때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수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증인의 임명)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자로 한다.

제13조(공증인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명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하여진 기간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증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75세에 이른 때에는 정년(停年)으로 퇴직한다.

③ 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3(직무집행방법) ①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법무법인 등을 대표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직 중이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자
3. 75세 이상인 자
4.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

③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6(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격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공증인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4제2항의 기간 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정하여진 기간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 등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공증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증서를 작성할 없다.

제15조의10(공증인 직무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공증인은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미 제1항의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 또는

인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을 받거나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구역의 상황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부) ① 신원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부(還付)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돌려주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署名)과 직인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을 변경하거나 직인을 바꾸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인영을 신고 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

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의 반출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법인의 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3. 제57조제4항 및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併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적힌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아야 하고, 그와 안면이 있어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와 안면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旅券)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시킬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안면이 있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

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언어로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맹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

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미성년자

2. 맹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서명할 수 없는 자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6.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과 그 대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당사자 양쪽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字劃)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검은색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문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문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글자 수 및 위치를 칸의 밖이나 문서 끝의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는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문서 끝의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매 지면의 철목(綴目)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과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결)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결(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결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와의 철목 및 부속 서류 상호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를 대신하여 이를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의 작성사실을 기입할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사항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기재한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하여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체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체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를 대신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

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뜻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체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자작(自作)]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매 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제36조와 문자의 수정·삽입·삭제에 관한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에 관한 제1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부착하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부착하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및 배서인(背書人)과 공증

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제178조제1항·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제5장 인증(認證)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또는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를 사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

다.

② 제1항의 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조의3(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의 인증은 번역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을 틀림없이 번역한 것임을 서약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은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를 병기한다.

④ 번역문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8조부터 제66조의2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그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62조(정관인증의 취급)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이 취급한다.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제62조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각각의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을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간인에 관한 제4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보존정관 멸실의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4항 및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기한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증서 원본 멸실 시의 기재와 서명날인에 관한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公法人)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

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사무의 취급 등) 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공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의 규정 외에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

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②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7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의 촉탁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30조도 준용한다.

제66조의5(인증한 전자문서 정보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보관료를 받는다.

④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의 취

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한 정보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로서 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4항의 청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의6(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등) ①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제66조의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나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서명
2. 지정공증인이 제1호의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것
- ②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만든다.

제66조의7(전자공증관리센터)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전자문서 및 인증 정보의 안전한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공증관리센터를 둔다.

- ② 전자공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대리, 검무와 인계

제67조부터 제7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 공증인의 사무소) ① 공증인의 대리자가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被代理) 공증인의 사무소로 한다.

- ② 공증인의 대리자가 직무상 서명할 때에

는 피대리 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은 대리 공증인에게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겸무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하에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제72조를 준

용한다.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의 변경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제72조와 후임자 기재에 관한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한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공증업무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하고, 공증업무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공증업무 담당자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의2에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입회사무) ①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4(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5(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

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방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연수교육 실시상황과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6(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공증 서류를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보관의 대상 서류·절차·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제77조의7(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8(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이 적정하지 않게 취급한 직무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정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는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장(章)에 규정된 감독권에 따라 처리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회부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정직(停職)
4.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제84조(징계기관)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82조제1항에 의한 징계 회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84조의3(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은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공증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제84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증인의 직무 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과태료의 집행) ①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公課)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8조(벌칙) ①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무법인 등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벌칙) 제57조제2제1항 또는 제6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임을 알면서 선서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5제2항제3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에 「변호사법」(제7357호, 2005. 1. 27) 부칙 제6조에 따라 존속하고 있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한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법무법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부칙 제2조에 따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법무법인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의 특례) 인가공증인은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에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변호사법」(제7357호, 2005. 1. 27)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규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17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31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公證人法</u>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u>公證人의 地位와 그 公證事務處理를 適切히 規律하여 公證人 制度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u> <신 설> 第2條(公證人의 職務) <u>公證人은 當事者 其他 關係人의 囑託에 依하여 法律行爲 其他 私權에 관한 事實에 對한 公正證書의 作成, 私署證書에 對한 認證과 이 법 및 기타의 法令이 정하는 公證人의 事務를 처리함을 그 職務로 한다.</u>	<u>공증인법</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u>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자(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와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에

第3條(文書의 公正力의 要件) 公證人이 作成하는 文書는 이 法 其他의 法律이 定하는 要件을 具備하지 아니하면 公正의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4條(囑託引受義務) ①公證人은 正當한 理由없이 囑託을 拒絶하지 못한다.

②公證人이 囑託을 拒絶하는 境遇에는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拒絶의 理由를 告하여야 한다.

第5條(事件의 漏泄禁止) 公證人은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取扱한 事件을 漏泄하지 못한다. 다만, 囑託人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6條(兼職禁止) 公證人은 다른 公務를 兼하거나 商業을 經營하거나 또는 商事會社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社團法人의 代表者나 使用人이 될 수 없다. 다만,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7條(手數料, 日當, 旅費) ①公證人은 囑託人으로부터 手數料, 日當과 旅費를 받는다.

<신 설>

②公證人은 第1項에 記載한 것을 除外하고는 如何한 名義로도 그 取扱한 事件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정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公正(公正)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그의 송계인이나 청구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

關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

③第1項의 手數料, 日當과 旅費에 關한 事項은 法務部令으로써 定한다.

第8條(公證事務의 代行) 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內에 公證人이 없는 境遇 또는 公證人이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은 地方檢察廳檢事 또는 地方法院登記所長으로 하여금 管轄區域內에서 公證人의 職務를 行하게 할 수 있다.

第9條(公證人의 職務에 關한 規定의 準用) 이 法 其他 法令中 公證人의 職務에 關한 規定은 第8條에 依하여 公證人의 事務를 取扱하는 檢事 또는 地方法院登記所長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7條에 依한 手數料, 日當과 旅費는 國庫의 收入으로 한다.

第2章 任免과 所屬

第10條(公證人의 所屬과 定員) ①公證人은 地方檢察廳의 所屬으로 한다.

②各地方檢察廳所屬 公證人의 定員數는 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마다 法務部長官이 이를 定한다.

<후단 신설>

第11條(公證人의 任命) 公證人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所屬地方檢察廳을 指定한다.

第12條(資格) 公證人에 任命될 수 있는 者는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을 가

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에 대한 원활한 공증사무의 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관할구역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 공증인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때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수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증인의 임명)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제

진 者로 한다.

第13條(公證人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證人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선고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 또는 免職의 處分을 받거나 辯護士法에 의하여 除名된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14條(公證人の 免職) ① 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公證人을 免職시킬 수 있다.

1. 公證人이 辭任을 願하는 때
 2. 公證人이 期間內에 身元保證金 또는 그 補充額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
 3. 公證人이 身體 또는 精神의 衰弱으로 職務를 執行할 수 없게 된 때
- ② 第1項第3號의 境遇에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者로 한다.

제13조(공증인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公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者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者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者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資格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者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제14조(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명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하여진 기간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第15條(任期와 當然退職) ①公證人の 任期는 5年으로 하되 再任命할 수 있다. 다만, 再任命할 때마다 그 任期는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③公證人이 第13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공증인이 75세에 이른 때에는 정년(停年)으로 퇴직한다.

③ 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3(직무집행방법) ①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법무법인 등을 대표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

<신 설>

<신 설>

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직 중이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자

3. 75세 이상인 자

4.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

③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6(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공증인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4제2항의 기간 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5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정하여진 기간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 등이 해산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章 職務執行에 關한 通則

第16條(職務執行區域) 公證人의 職務執行區域은 그 所屬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에 依한다.

第17條(事務所) ①公證人이 事務所를 設置 또는 移轉하려고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③合同事務所의 設置 및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대리한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증서를 작성할 없다.

제15조의10(공증인 직무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공증인은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미 제1항의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 또는 인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 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17조(사무소)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公證人は 그 事務所에서 職務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事件의 性質上 事務所에서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 또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18條(身元保證金の 納付) ①公證人は 任命狀을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内に 所屬地方檢察廳에 身元保證金を 納付하여야 한다.

②身元保證金の 額は 區域의 狀況에 따라 法務部令으로써 定한다.

③第1項에 依하여 納付한 金額이 第2項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에 未達하여 補充의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内に 그 不足額을 補充하여야 한다.

④公證人は 身元保證金を 납부할 때까지는 그 職務를 行할 수 없다.

第19條(身元保證金還付) ①身元保證金を 還付하는 境遇에는 그 身元保證金에 對한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 6月以内に 申請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身元保證金は 第1項의 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이를 還付하지 아니한다.

③身元保證金は 다른 公課金 또는 債權에 優先하여 第1項의 公告費用에 充當한다.

第20條(署名・職印의 申告) ①公證人は 그 職務를 行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署名과 職印의 印影을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公證人이 申告한 署名을 變更하거나 職印을 改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所屬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을 받거나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구역의 상황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부) ① 신원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부(還付)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돌려주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署名)과 직인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을 변경하거나 직인을 바꾸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

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1條(公證人の 除斥) 公證人は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職務를 行할 수 없다.

1. 囑託人, 그 代理人 또는 囑託받은 事項에 關하여 利害關係를 가지는 者の 배우자 또는 친족인 때, 親族關係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2.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의 法定代理人인 때
3. 囑託받은 事項에 關하여 利害關係가 있을 때
4. 囑託받은 사항에 관한 代理人이나 補助人인 때 또는 代理人이나 補助人이었을 때

第22條(署名時の 記載事項) 公證人が 職務上 署名할 때에는 그 職名・所屬과 事務所所在地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23條(公證人補助者) ①公證人は 補助者を 두고 그 職務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者を 두고자 하는 公證人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補助者の 交替・解雇 또는 死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4條(書類의 持出禁止, 保存) ①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의 原本과 그 附屬書類 第

檢事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檢事長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인영을 신고 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檢事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서류의 반출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

6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證人이 保存하는 定款과 그 附屬書類, 其他 法令에 依하여 公證人이 作成한 帳簿는 災難을 避하기 爲하여 不得已한 境遇와 檢察廳의 命令이 있는 境遇가 아니면 이를 事務所 밖으로 持出할 수 없다.

②第1項의 書類의 保存과 廢棄에 關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第4章 證書의 作成

第25條(證書를 作成할 수 없는 境遇) 公證人은 法令에 違反한 事項, 無効인 法律行爲와 無能力으로 因하여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에 關하여 證書를 作成할 수 없다.

第26條(使用語) ①公證人이 作成하는 證書에는 國語를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囑託人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外國語를 併記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경우 國語와 이에 併記한 外國語의 內容이 서로 다른 때에는 國語로 기재된 內容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3. 제57조제4항 및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併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적힌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다.

第27條(囑託人の 確認) ①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하기 爲하여는 囑託人の 姓名을 알고 또한 이와 面識이 있어야 한다.

②公證人이 囑託人の 姓名을 모르거나 또는 그와 面識이 없을 때에는 住民登錄證 기타 權限있는 行政機關이 발행한 寫眞이 첨부된 證明書を 제출하게 하거나 公證人이 姓名을 알고 面識도 있는 證人 2人으로 하여금 그 囑託人이 相違없음을 證明하게 하거나 其他 이에 準하는 確實한 方法에 依하여 相違없음을 證明시켜야 한다. 다만, 囑託人이 外國國籍者인 경우에는 旅券 또는 大韓民國에 駐在하는 당해 外國國籍者の 本國의 領事가 발행한 證明書로써 相違없음을 證明시킬 수 있다.

③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하는 때에는 證書를 作成한 後 3日以內에 證書의 作成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第2項의 節次를 取할 수 있다.

④第3項의 節次를 밟은 때에는 그 證書는 急迫한 事由로 因하여 作成된 것이 아니라는 理由로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28條(通譯人の 使用) 囑託人이 國語를 解得하지 못하는 境遇 또는 聾者, 啞者 其他 言語를 發言하지 못하는 者로서 文字도 解得하지 못하는 境遇에 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하기 爲하여는 通譯人을 使用하여야 한다.

第29條(參與人の 參與) ①囑託人이 盲者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아야 하고, 그와 안면이 있어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와 안면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旅券)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시킬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안면이 있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언어로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맹인

인 境遇 또는 文字를 解得하지 못하는 境遇에 公證인이 證書를 作成할 때에는 參與人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囑託인이 參與人을 參與시킬 것을 請求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30條(代理囑託) 代理人에 依하여 囑託되었을 境遇에는 第27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은 그 代理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31條(代理權의 證明) ① 代理人的 囑託으로 公證인이 證書를 作成할 때에는 代理權을 立證할 證書를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證書가 認證을 받지 아니한 私署證書인 때에는 그 證書外에 權限있는 行政機關이 作成한 印鑑證明書 또는 署名에 關한 證明書를 提出하게 하여 證書가 眞正한 것임을 證明하게 하여야 한다.

③ 證書의 作成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代理 또는 그 方式의 欠缺을 追完하였을 때에는 그 證書는 欠缺이 있었다는 理由로 效力이 妨害되지 아니한다.

第32條(許諾, 同意를 要하는 法律行爲의 公證) ① 第3者의 許諾이나 同意를 要하는 法律行爲에 關하여 公證인이 證書를 作成할 때에는 그 許諾이나 同意가 있었음을 立證할 證書를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31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33條(通譯人, 參與人의 選定과 資格) ① 通譯人과 參與人은 囑託이나 또는 그 代理人이 이를 選定하여야 한다.

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公證인이 證書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허락·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參與人은 通譯人을 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參與人이 될 수 없다. 다만, 第29條第2項의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 未成年者

2. 삭제

3. 署名할 수 없는 者

4. 囑託事項에 關하여 利害關係있는 者

5. 囑託事項에 關하여 代理人 또는 補助人이나 代理人 또는 補助人이었던 者

6. 公證人이나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의 配偶者, 친족, 法定代理人, 被用者 또는 同居人

7. 公證人の 補助者

第34條(證書의 內容) 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함에는 그 聽取한 陳述, 그 目睹한 事實 其他 實驗한 事實을 記錄하고 또한 그 實驗의 方法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35條(記載事項) 公證人이 作成하는 證書에는 그 內容以外에 다음 각 호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證書의 番號

2. 囑託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所在地

3. 代理人에 依하여 囑託되었을 때에는 그 事由와 代理權을 證明할 證書를 提出시킨 事實과 그 代理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4.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의 姓名을 알고 있고 또한 이와 面識이 있을 때에는 그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미성년자

2. 맹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3. 서명할 수 없는 자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6.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 친족 · 법정대리인 ·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 · 직업 · 성명 및 나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과 그 대리인의 주소 · 직업 · 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事實

5. 제3자의 許諾이나 同意있음을 證明하는 證書를 提出시켰을 때에는 그 事由와 그 제3자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所在地

6. 제27條第2項에 依한 證明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 證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또는 그 確認의 方法

7. 제27條第3項의 境遇에는 그 事由

8. 제31條第2項에 依한 證明이 있었을 때에는 그 事由

9. 通譯人이나 參與人을 參與시켰을 때에는 그 事由와 通譯人 또는 參與人의 住所, 職業, 姓名과 年齡

10. 作成의 年月日과 場所

第35條의2(附記) ①公證人은 公正證書에 기재된 當事者 雙方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에 의하여 債務의 全部辨濟나 契約의 全部解消事實을 證書의 原本에 附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를 함에 있어서는 그 年月日을 明記하고 囑託人과 公證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第27條 내지 第32條와 第36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證書作成方法) ①公證人이 證書를 作成할 때에는 普通平易한 用語를 使用하고 字劃을 明白하게 하여야 한다.

②接續하여야 할 字行에 空白이 있을 때에는 直線 또는 斜線으로 된 墨線으로 이를 接續케 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직업·성명·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당사자 양쪽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字劃)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검은색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문자가 없음을 표시

③삭제

第37條(文字의 變改, 挿入, 削除) ①證書의 文字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

②證書에 文字를 挿入할 때에는 그 字數와 位置를 欄外나 末尾의 餘白에 記載하고 公證人,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과 參與人이 이에 捺印하여야 한다.

③證書의 文字를 削除하는 때에는 그 文字는 明白히 읽을 수 있도록 字體를 남겨 두고 削除한 字數와 位置를 欄外나 末尾의 餘白에 記載하고 公證人,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과 參與人이 이에 捺印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訂正은 效力이 없다.

第38條(證書作成節次) ①公證人은 그가 作成한 證書를 列席者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閱覽시켜 囑託人 또는 그 代理人의 承認을 얻어 그 趣旨를 證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通譯人을 參與시켰을 境遇에는 第1項外에 通譯人으로 하여금 證書의 趣旨를 通譯시키고 그 趣旨를 證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記載를 한 때에는 公證人과 列席者는 各自證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列席者로서 署名할 수 없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事由를 證書에 記載하고 公證人과 參與人이 이에 捺印하여야 한다.

⑤證書가 數枚에 걸치는 때에는 公證人은 每紙面의 綴目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37조(문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글자 수 및 위치를 칸의 밖이나 문서 끝의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는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문서 끝의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매 지면의 철목(綴目)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第39條(書面の 引用) ①公證人이 作成하는 證書에 他書面을 引用하고 이를 그 證書에 添附하는 때에는 公證人은 그 證書와 添附書面과의 綴目に 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第36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은 第1項의 添附書面に 準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依한 添附書面은 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의 一部로 看做한다.

第40條(附屬書類의 連綴) ①代理權을 證明하는 證書, 權限있는 行政機關이 發행한 證明書, 第3者의 許諾이나 同意를 證明하는 證書 其他의 附屬書類는 公證人이 作成한 證書에 이를 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囑託人이 附屬書類의 原本의 還付를 請求한 境遇에는 그 謄本을 原本에 代身하여 連綴할 수 있다.

②公證人은 證書와 그 附屬書類와의 綴目과 附屬書類 相互의 綴目に 間印을 하여야 한다.

第41條(原本滅失의 境遇) ①證書의 原本이 滅失한 境遇에는 公證人은 이미 交付한 證書의 正本이나 謄本을 回收하여 所屬地方檢察廳 檢事長의 認可를 받아 滅失한 證書에 代신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證書에는 所屬地方檢察廳 檢事長의 認可를 받아 滅失한 證書에 代신하여 이를 保存한다는 趣旨와 認可의 年月日을 記載하고 公證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과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와의 철목 및 부속 서류 상호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를 대신하여 이를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42條(印紙의 貼付) 公證人은 囑託人으로 하여금 印紙稅法에 依하여 證書의 原本에 印紙를 貼用하여야 한다.

第43條(原本의 閱覽) ①囑託人, 그 承繼人 또는 證書의 趣旨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證明한 者は 證書의 原本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27條第1項, 第2項, 第30條와 第31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에 依하여 公證人이 證書의 原本을 閱覽시키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③公證人이 囑託人의 承繼人에게 證書의 原本을 閱覽시킬 境遇에는 承繼人임을 證明하는 證書를 提出케 하여야 한다.

④檢事는 언제든지 公正證書의 原本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44條(證書原簿) 公證人은 證書原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第45條(證書原簿記入事項) ①證書原簿에는 證書의 作成時마다 進行의 順序에 따라 다음 事項을 記入하여야 한다.

1. 證書의 番號와 種類
2. 囑託人의 住所와 姓名,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所在地
3. 作成의 年月日

②第1項의 規定은 證書의 作成을 記入할 帳簿에 關하여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6條(正本의 交付) ①囑託人 또는 그 承繼人은 證書의 正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의 작성사실을 기입할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있다.

②第27條第1項, 第2項, 第30條, 第31條第1項・第2項, 第4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에 依하여 公證人이 證書의 正本을 作成할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31條第2項의 規定은 囑託人의 承繼人이 證書의 正本의 交付를 請求하는 때에 提出할 證書에 이를 準用한다.

第47條(正本記載事項) ①證書의 正本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는 公證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證書의 全文
2. 正本인 事實
3. 交付를 申請한 者의 姓名
4. 作成의 年月日과 場所

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證書의 正本으로서의 效力이 없다.

第48條(抄錄正本) ①數個事件을 列記하는 證書 또는 數人各者에게 關係를 달리하는 證書에 關하여는 有用한 部分과 證書의 方式에 關한 記載를 抄錄하여 그 正本을 作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正本에는 抄錄正本인 事實을 記載하여 第47條第1項第2號의 記載에 대신하여야 한다.

第49條(正本交付事實의 記入) 公證人이 證書의 正本을 交付할 때에는 그 證書의 原本 및 正本末尾에 囑託人 또는 그 承繼人 누구에게 正本을 交付하였다는 趣旨와 그 交付의 年月日을 記載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사항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초록 정본)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기재한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하여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를 대신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뜻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50條(謄本の 交付) ①囑託人, 그 承繼人 또는 證書의 趣旨에 關하여 法律上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證明한 者는 證書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の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27條第1項, 第2項, 第30條, 第31條第1項, 第2項, 第43條第3項과 第46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에 依하여 公證人이 證書의 謄本을 作成할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51條(謄本記載事項) 證書의 謄本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公證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證書의 全文
2. 謄本인 事實
3. 作成의 年月日과 場所

第52條(抄錄謄本) ①證書의 謄本은 그 一部에 關하여 이를 作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謄本에는 抄錄謄本인 事實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53條(附屬書類의 謄本) 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은 證書의 附屬書類의 謄本을 作成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54條(請求者의 謄本自作) ①證書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을 請求하는 者는 이에 記載할 事項을 스스로 記載하고 公證人의 署名捺印만을 請求할 수 있다.

②公證人이 第1項의 謄本에 署名捺印한 때에는 그 謄本은 公證人自身이 作成한 것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第55條(正本, 謄本作成方法) ①證書의 正本이나 謄本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이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자작(自作)]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數枚에 이르는 境遇에는 公證人은 每紙面의 綴目に 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第36條와 第37條의 規定은 證書의 正本과 謄本 또는 그 附屬書類의 謄本の 作成에 이를 準用한다.

第56條(遺言書, 拒絕證書作成의 特則) 第17條第4項의 規定은 公證人이 遺言書를 作成하는 境遇에, 第27條乃至 第31條의 規定은 公證人이 拒絕證書를 作成할 境遇에 各各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6條의2(어음·手票의 公證등) ①公證人은 어음·手票에 附着하여 強制執行을 認諾하는 취지를 기재한 公正證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는 어음·手票의 發行人과 受取人, 讓渡人과 讓受人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公證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手票의 原本에 附着하여서는 證書의 正本을 작성하고, 그 어음·手票의 寫本에 附着하여서는 證書의 原本과 謄本을 작성한 후, 그 正本은 어음·手票상의 債權者에게, 謄本은 어음·手票상의 債務者에게 각각 교부하며, 原本은 公證人이 보존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手票에 公證된 發行人과 背書人 및 公證된 換어음을 公證引受한 支給人에 대하여서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公證인은 매 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證書의 正本·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證書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제36조와 문자의 수정·삽입·삭제에 관한 제37조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公證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에 관한 제1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公證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公證인은 어음·수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公正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公證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부착하여 證書의 正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부착하여 證書의 原本 및 등본을 작성한 후, 證書의 正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公證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및 배서인(背書人)과 공증된 환어음을 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본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 보는 證書에 대한 執行文의 付與는 公證된 어음·手票의 受取人 또는 公證背書된 讓受人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⑥第25條 내지 第38條, 第40條 내지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6條의3(執行文付與의 제한) ①公證人은 公正證書를 작성한 날로부터 7日を 경과하지 아니하면 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다.

②公證人은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가 있는 때에는 執行文을 付與할 수 없다.

第56條의4(債務名義인 公正證書의 正本등의 송달) ①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債務名義인 證書의 正本이나 謄本 또는 그 證書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執行文과 證明書謄本の 송달은 郵便이나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第46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을 교부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證書의 正本 또는 謄本の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郵便에 의한 송달은 申請에 의하여 公證人이 行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를 準用한다.

第5章 私署證書의 認證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4(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제178조제1항·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장 인증(認證)

第57條(認證方法) ①私署證書의 認證은 當事者로 하여금 公證人의 面前에서 私署證書에 署名 또는 捺印하게 하거나 私署證書의 署名 또는 捺印을 本人이나 그 代理人으로 하여금 確認하게 한 後 그 事實을 證書에 記載함으로써 行한다.

②私署證書의 謄本에 對한 認證은 私署證書와 對照하여 그와 符合함을 認定한 後 그 事實을 記載함으로써 이를 行한다.

③私署證書에 文字의 插入, 削除, 變改, 欄外記載 其他의 訂正이 있거나 破損 其他 外見上 顯著히 疑心할 만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狀況을 認證文에 記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또는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를 사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조의3(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의 인증은 번역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을 틀림없이 번역한 것임을 서약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은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

第58條(證書에의 記載) 認證을 賦與하여
야 할 證書에는 登簿番號, 認證의 年月日
과 그 場所를 記載하고 公證人과 參與人
이 署名捺印하고 證書와 認證簿와의 사
이에 間印을 하여야 한다.

第59條(準用規定) 第25條乃至 第33條, 第
36條, 第37條와 第38條第5項의 規定은
私署證書에 認證을 賦與하는 境遇에 이
를 準用한다.

第60條(認證簿) 公證人은 認證簿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第61條(認證簿記載事項) 認證簿에는 認證
을 賦與할 때마다 進行의 順序에 따라 다
음 事項을 記入하여야 한다.

1. 登簿番號
2. 囑託人의 住所와 姓名,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 所在地
3. 私署證書의 種類와 署名捺印者
4. 認證의 方法
5. 參與人의 住所와 姓名
6. 認證의 年月日

第62條(定款認證取扱公證人) 商法 第292
條와 그 準用規定에 依한 定款의 認證에
關한 事務는 會社本店의 所在地를 管轄
하는 地方檢察廳의 所屬公證人이 取扱한
다.

第63條(定款認證의 節次) ①第62條에 依

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인증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를 병기한다.

④ 번역문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57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
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
증의 연월일 및 그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
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認證簿)
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
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62조(정관인증의 취급) 「상법」 제292조
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관
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이 취급
한다.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제62조에 따

하여 定款의 認證을 囑託하려고 할 때에는 定款 2通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定款의 認證은 囑託人으로 하여금 公證人의 面前에서 定款 各 通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을 自認케 한 後 그 事實을 記載함으로써 이를 行한다.

③公證人은 第2項의 記載를 한 定款中 1通을 自身이 保存하고 他1通은 囑託人에게 還付하여야 한다.

④第57條第3項과 第58條 乃至 第61條의 規定은 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64條(附屬書類의 連綴) ①代理權을 證明하는 證書, 權限있는 行政機關이 發행한 證明書, 第3者의 許諾이나 同意를 證明할 證書 其他의 附屬書類는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證人이 保存하는 定款에 連綴하여야 한다.

②第4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65條(保存定款滅失의 境遇) ①第6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存하는 定款이 滅失한 때에는 公證人은 囑託人에게 還付한 定款에 依하여 謄本을 作成하거나 또는 이미 交付한 定款의 謄本을 回收하여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의 認可를 받아 滅失한 定款에 대신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각각의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한 정관 중 1통을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간인에 관한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의 멸실의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②第4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66條(準用規定) 第43條와 第50條 乃至 第55條의 規定은 公證人이 保存하는 定款과 그 附屬書類에 이를 準用한다.

第66條의2 (法人議事錄의 認證) ①法人의 登記를 할 때에 그 申請書類에 첨부되는 法人의 總會등의 議事錄은 公證人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하는 公證人은 그 總會등의 決議節次와 내용이 眞實에 符合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은 公證人이 당해 法人의 議決場所에 참석하여 決議節次와 내용을 檢査하거나 당해 議決을 한 者중 그 議決에 필요한 定足數이상의 者 또는 그 代理人의 촉탁을 받아 그 囑託人으로부터 議事錄의 내용이 眞實에 符合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陳述을 듣고 囑託人으로 하여금 公證人의 앞에서 議事錄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② 제57조제4항 및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기한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증서 원본 멸실 시의 기재와 서명날인에 관한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 (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公法人)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第57條第3項, 第58條 내지 第61條, 第63條第1項·第3項, 第64條 내지 第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事錄을 認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3(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사무의 취급 등) 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공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의 규정 외에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공증사무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②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신 설>

경우에는 제57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의 촉탁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30조도 준용한다.

제66조의5(인증한 전자문서 정보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보관료를 받는다.

④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한 정보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청구는 법무부령이

<신 설>

<신 설>

第6章 代理兼務와 引繼

第67條(公證職務代理의 囑託) ①公證人이 疾病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同一檢察廳의 管轄區域內의 公證人에게 代理를 囑託할 수 있다.

②公證人이 第1項에 依하여 代理를 囑託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所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의6(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등) ①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4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제66조의5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나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서명

2. 지정공증인이 제1호의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것

② 제1항제2호의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만든다.

제66조의7(전자공증관리센터)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전자문서 및 인증 정보의 안전한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공증관리센터를 둔다.

② 전자공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대리, 검무와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代理를 解免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公證職務의 代理命令) ①第67條 第1項의 境遇에 公證人이 代理를 囑託할 수 없을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그 管轄區域內의 他公證人에게 代理를 命할 수 있다.

②公證人이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된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第1項의 代理를 解免하여야 한다.

第69條(代理公證人の 事務所) ①公證人の 代理者가 第67條 및 第68條에 依하여 그 職務를 遂行하는 事務所는 被代理公證人の 事務所로 한다.

②公證人の 代理者가 職務上 署名할 때에는 被代理公證人の 職姓名, 所屬, 事務所所在地와 그 代理者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第21條의 規定은 公證人の 代理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第70條(事務所書類의 封印) 公證人の 死亡, 免職 또는 辭任으로 因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그가 指定한 公務員으로 하여금 遲滯없이 事務所의 書類에 封印케 하여야 한다.

第71條(兼務命令) ①公證人이 死亡, 免職 또는 辭任한 後 即時 後任者가 任命되지 아니한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그 管轄區域內의 公證人에게 兼務를 命할 수 있다.

②後任者가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된 때에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은 第1項의 兼務를 解任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解任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 제67조 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9조(대리 공증인의 사무소) ① 공증인의 대리자가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被代理) 공증인의 사무소로 한다.

② 공증인의 대리자가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 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은 대리 공증인에게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겸무를 해임하여야 한다.

第72條(書類의 接受) ①公證人이 免職 또는 辭任한 때에는 後任者 또는 兼務者는 前任者의 參與下에 遲滯없이 書類를 接受하여야 한다.

②死亡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書類를 授受할 수 없는 境遇에는 後任者 또는 兼務者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定하는 公務員의 參與下에 書類를 受繼하여야 한다.

③第70條에 依한 書類의 封印後에 任命된 後任者나 兼務者는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定한 公務員의 參與下에 封印을 解除하고 書類를 受繼하여야 한다.

第73條(準用規定) 第72條의 規定은 兼務者가 書類를 再次 他公證人에게 引渡할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74條(兼務者, 後任者인 事實의 記載) ① 兼務者가 職務上 署名하는 境遇에는 兼務者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②前任者나 兼務者가 作成한 證書에 依하여 後任者가 그 正本이나 謄本을 作成하여 署名할 때에는 後任者임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75條(書類引繼命令) ①公證人이 死亡, 免職 또는 辭任한 境遇에 定員의 改正으로 因하여 後任者가 必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公證人이 所屬한 地方檢察廳의 管轄區域內의 他公證人에게 書類의 引繼를 命하여야 한다.

②第72條와 第7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에 依하여 書類의 引繼를 命令받은 公證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하에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의 변경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제72조와 후임자 기재에 관한 제74조제

第76條(停職) ①第70條, 第71條, 第72條 第3項, 第74條第1項의 規定은 公證人의 停職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兼務者의 事務所는 停職者의 事務所로 한다.

第77條(準用規定) 第72條와 第73條의 規定은 地方檢察廳檢事 또는 地方法院登記所長이 第8條에 依하여 公證人의 職務를 遂行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6章의2 公證協會

第77條의2(公證協會의 目的등) ①公證業務의 개선과 統一을 도모하고, 公證業務의 指導와 連絡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며, 公證業務 擔當者의 品位를 보전하기 위하여 公證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公證人·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 또는 公證認可法務法人은 公證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③公證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公證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을 정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公證協會의 會則·任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公證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2항을 준용한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한다.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공증업무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하고, 공증업무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공증업무 담당자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삭 제>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삭 제>

제77조의3(임회의무) ① 임명공증인과 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가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4(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5(회원 연수 등)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방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연수교육 실시상황과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6(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공증 서류를 통합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보관의 대상 서류·절차·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제77조의7(감독)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 설>

第7章 監督과 懲戒

第78條(監督機關) 公證人은 法務部長官이 이를 監督한다.

<신 설>

第79條(監督權의 내용) 第78條의 監督權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다.

1. 公證人이 부적당하게 취급한 職務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적정하게 職務를 취급하도록 指示하는 것
2.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公證人의 地位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警告하는 것. 이 경우 警告하기 전에 그 公證人에게 辨明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80條(書類의 檢閱) 法務部長官은 年 1回以上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公證人이 保存하는 書類를 檢閱케 할 수 있다.

第81條(異議의 申請) ① 囑託人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證人의 事務取扱에 關하여 그 所屬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8(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이 적정하지 않게 취급한 직무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정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는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의 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異議에 對한 處分에 關하여는 다시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異議가 있을 때에는 本章에 規定된 監督權에 依하여 處理한다.

第82條(懲戒事由 및 報告) ①公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懲戒에 回附한다.

1.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신 설>

②各地方檢察廳檢事長은 그 管轄區域內의 公證人에 關하여 懲戒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卽時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83條(懲戒의 種類) 懲戒는 다음의 5種으로 한다.

1. 譴責
2. 100萬원以下の 過怠料
3. 1年以下の 停職
4. 삭제
5. 免職

第84條(懲戒機關) ①第83條第2號 乃至 第5號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②第83條第1號의 懲戒는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장(章)에 규정된 감독권에 따라 처리한다.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회부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정직(停職)

4.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제84조(징계기관)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삭 제>

제84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82조제1항에 의한 징계 회부는 징계사유가 발생

<신 설>

第85條(懲戒委員會) ①法務부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6條(職務停止) ①公證인이 拘束되거나 또는 拘留의 刑을 받은 때에는 釋放될 때까지 그 職務가 停止된다.

②第8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懲戒節次가 開始된 때에는 그 終了時까지 公證人の 職務를 停止시킬 수 있다.

③公證人の 停職에 關한 規定은 그 職務停止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87條(過怠料의 執行) ①過怠料를 完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檢事의 命令으로써 이를 執行한다.

②第1項의 執行에 關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 第24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公證인이 納付한 身元保證金은 第19條第3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他公課와 債權에 優先하여 이를 過怠料에 充當한다.

第88條(罰則) ①公證人, 辯護士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務法人의 構成員이나 構成員이 아닌 所屬辯護士 또는 同法 第4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의 構成員이 第6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84조의3(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 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제85조(징계위원회) ① 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직무정지)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은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공증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제84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증인의 직무 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과태료의 집행) ①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公課)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8조(벌칙) ①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중 法務法人의 경우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務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무법인 등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9조(벌칙) 제57조2제1항 또는 제6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임을 알면서 선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5제2항제3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에 「변호사법」(제7357호, 2005. 1. 27) 부칙 제6조에 따라 존속하고 있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한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법무법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부칙 제2조에 따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법무법인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4조(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의 특례) 인가공증인은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에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변호사법」 (제7357호, 2005. 1. 27)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17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31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